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Vol.25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보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 판결들

25호

사법감시시

- 1 발간사
- 2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5 주제1.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 9 주제2.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 11 자 료. 대법원 판결 7가지, 왜 문제인가?
 - 11 노동자들에게는 더 없이 가혹한 대법원 판결
 - 12 관공비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판결
 - 13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현수막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옥외광고물?
 - 14 '청와대 가는 길 약도' 도 국가기밀로 비공개정보라 할 판결
 - 15 논리비약으로 삼성 재벌의 불법행위 보호해준 판결
 - 17 판결의 외피를 쓴 대법원의 정치적 선언
 - 18 인터넷시대를 외면하고 정치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퇴행적 판결
- 19 Review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 제25호’를 발행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다가올 9월과 10월의 대법원장 교체와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된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사법감시 제25호’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가운데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은 몇 사람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대법관 중에는 재판에 임하지 않는 대법관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힘을 갖는 자리인지 국민들이 아는데 도움되길 바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의 관료조직화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중 정말 문제있었던 판결을 골라보았습니다. 정치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알권리를 대법관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사범위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 때문에 7개의 판결만을 꼬집어 비판키로 했지만, 이런 판결들이 반복되는 한, 사법개혁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는 사법부 안팎에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연이은 교체국면을 앞둔 8월부터는 사회적 토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격한 논쟁이 벌어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현재 모습을 시골의 노인들부터 도시의 젊은이까지 알 수 있는 계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자리가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의 승진코스로서 여겨져온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대법원은 그래서 안 될 정말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차 병 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사법부가 바뀔까.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이다. 물론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보다는,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지금의 우리 사법부가 변해야 할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는 사정이라면, 새 대법원장은 당연히 무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전통과 관습과 법률에만 얽매어 있지 않고, 새 시대의 요구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무난하고 원만하게 법원을 이끌어갈 능숙한 사법 관료가 아니라,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청사진 한 장면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이 취임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다. 사법부는 본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더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이번 「사법감시」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만들었다.

사법부는 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가. 이 물음과 요구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일부에서는 그동안 사법부가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50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도 변한 것은 사실이다. 제도도 꽤 바뀌었고 구성원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든 개선이든 그 변화의

실상은 피상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사법부의 고질적 본바탕은 의연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문제나 부작용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질책과 자성의 소리가 법원 바깥보다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목표를 앞에 새기고 따져 보면 지금까지 성취했다는 사법부 개혁의 허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밖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신뢰를 얻고, 안으로는 관료화에 안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가 우리의 바람이다. 오늘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변모를 추구해 왔다는 사법부는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형식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방편으로 소수의 이익을 무시한 사례는 없는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 오히려 국가나 기업이나 금권의 힘 편에 기울어 묵시적 사정판결을 해버린 경우는 없을까.

우리 법원의 근황에서 이상적 열망으로부터 좀 벗어난 그런 사례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법원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다. 좀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면 법관 인사 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법관 인사의 최상층에는 지금도 대법관이란 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마지막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여전히 대법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같은 해 임관한 동기 중에서 한

두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불운의 탈락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전통의 미풍을 지킴으로써 한 기수의 사법사를 마감한다. 하지만 대법관이란 배석 판사로 출발한 사법 관료의 마지막 승리자 몇 사람에게 안겨 주는 월계관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양식은 무엇보다 대법원의 정책법원화를 계속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무엇보다 대법원 구성은 다양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대법원 구성은 법원 밖의 법률가를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가능하다. 대법관을 관료 법관의 마지막 승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위해 마련해 둔다면, 다양성을 통한 정책법원은 점점 멀어진다.

그 바로 아래는 더 심각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자리다. 고등부장 승진은 현재 법원 인사 제도가 전형적인 관료제도의 틀에 움매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대법관은 수도 적고 어느 정도 관운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부장이란 자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법관 생활의 마지막 승부처다. 그 전 단계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연수만 채우면 누구나 다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견 법관들의 첨예한 촉각은 고등부장 승진 가능성에 집중된다. 탈락하면 사직이고, 상처를 입고 그만둔 그들에겐 전관예우가 위로의 보상으로 베풀어진다. 그래서 작년 초 법원을 떠난 두 사람의 법원장은 하나같이 고법부장 승진 제도의 폐지 없이는 법원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퇴임사를 남겼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법원 개혁의 허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겠다. 단일호봉제라는 선의의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존재하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관료화의 폐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구성과 운영은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애써 준비했다는 예비판사 제도, 일부 변호사의 법관 임용, 법원의 통합과 신설 등이 무슨 근본적 개선책이 될 수 있겠는가. 장막을 거둬 보니 여전히 법관의 세계는 피라미드요, 그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 법관 인사 제도

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법원장만의 책임일까. 놀랍게도 거의 그렇다. 우리 현실은 그렇다. 바로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13인의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고등부장은 물론 예비판사를 포함한 전국 법관의 근무 평정과 임명, 보직 부여, 징계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은 앞에서 근원적 문제로 든 대법원 구성과 고등부장 승진 인사의 직접당사자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5개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원 13명에 대한 지명권이나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위원회의 50여 명에 이르는 위원 위촉도 그의 몫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물론 전국 법원의 예산과 행정에 관한 권한도 예외가 아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특유의 현상이다. 사법부의 인사, 예산, 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몰려 있는 실태는 실질적 민주화의 요구에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찌면 과거 비민주적 정부 시절 사법부 독립이란 미명 아래 모든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집중시킨 뒤, 독재자는 대법원장만 움직여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주장의 결론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떤 인물이 새 대법원장에 적합한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이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법관 인사 제도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난공불락의 대법원장에서 막힌 부분만 해결되면, 법관들 스스로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사심을 버리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진취적이고 기존의 권한에 연연하지 않을 대법원장은 법원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후보에 해당할 만한 사람은 이미 지금까지 승진의 관료제 습성에 젖어 있을 터이다. 혹 좋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법원 내부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형성된 인간 관계의 부담 때문에 신념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새 시대의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 밖에서 적임자를 찾는다면, 너무 세세한 경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미국 27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뒤 8년만에 다시 연방대법원장 자리에 앉기도 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걱정할 일도 아니다. 혹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대법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고령이라고 정치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는 정년이 1년 3개월 남은 후지바야시 에키조를 중간 구원투수처럼 최고재판소 장관에 임명했다. 그 뒤에는 검찰 출신 오카하라 마사오로 하여금 겨우 임기 1년 7개월을 수행하게 했다. 우리 법원사에서도 13명의 대법원장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령의 후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 대법원장은 훨씬 젊어야 가능할지 모른다. 파격적 인사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려 37년 동안 근무하며 위대한 소수의견자로 칭송받은 윌리엄 더글러스는 약관 41세에 임명됐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계층의 여론이나 상대적으로 커져버린 여당의 정치 공세에 질려 서둘러 타협해선 안 된다. 여론도 적당히 무마하고, 국회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성향의 인물 중에서, 사법 개혁의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중을 잘 헤아려 줄 사람을 내심 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1995년 일본에선 전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사회당의 무라야마 토미이치가 수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막 새로 임명해야 할 최고재판소 장관에 진보적 인물이 등장하리라는 꿈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무라야마는 최고재판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수파인 미요시 토오루를 기용해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정반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얼 워렌을 연방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굳건한 보수주의자인 줄 알았던 워렌은 기존의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세계 사법사를 통틀어 가장 찬란한 진보적 사법적극주의의 금자탑을 세웠다. 훗날 아이젠하워는 워렌을 임명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탄식했다.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믿고 임명한 대법원장으로부터 배신당할지 모른다. 따라서 너무 사적인 소통에 의한 정보와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어차피 배반당한다면 위의 두 사례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역시 변호사이자 미식축구 선수이기도 했던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한 말이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중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만큼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우리 사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보아도 새 대법원장의 의미는 크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새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사법사상 그리고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맞는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마땅히 달라져야 할 부분을 서슴없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을 기대한다. 이번 여름 우리의 서늘한 희망이다. ■

I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제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종합법령 검색서비스와 대법원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통해 2005년 7월 현재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각종 법령을 확인하였음.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법령에는 헌법에서부터 일반 법률,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대법원 규칙 등이 있으며 법령에서 확인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은 아래와 같음.

1. 대법원장 자격요건 및 임기 등

구 분	내 용	법적 근거	비 고
임용 자격	1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 수행 또는 변호사자격 보유 하면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법학조 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법원조직법 제42조	대법관도 동일한 자격필요
임 기	6년	헌법 제105조	대법관 임기는 6년, 그 외 판사는 10년
중임 여부	중임할 수 없음	헌법 제105조	대법관과 그 외 판사는 연임 가능
정 년	70세	법원조직법 제45조	대법관은 65세, 그 외 판사는 63세
임명 방식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함	헌법 제104조	

2.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는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한 축인 사법부의 대표자임. 이에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표자로서 주요 국가기구 구성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자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 조직 책임자로서 사법부의 인사와 행정권을 쥐고 있음.

2-1. 권력3부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권한

대법원장은 권력3부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기구 구성에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음. 이외 최근 국회에서는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사례도 있음.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비 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총9명) 지명권	헌법 제111조	나머지 6명중 3명은 국회선출, 3명은 대통령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총9명) 지명권	헌법 제114조	나머지 6명중 3명은 국회선출, 3명은 대통령임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 3명(총11명) 지명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나머지 8명중 4명은 대통령 추천, 4명은 국회 선출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 3명(총9명) 추천권	부패방지법 제12조	나머지 6명중 3명은 대통령 임명, 3명은 국회 추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1명 (당연직 제외 총5명) 추천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	나머지 4명중 2명은 국회의장 추천, 2명은 대통령 위촉

● 최종영 현 대법원장의 법적 권한 행사 사례

구 분	지명 또는 추천 명단
헌법재판관 지명	김영일(부산지법원장), 김경일(수원지법원장), 전호숙(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공현(법원행정처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유지담(대법관), 권광중(사법연수원장), 신명균(사법연수원장), 박영무(사법연수원장), 홍일표(사법연수원장), 이근웅(사법연수원장), 김연태(사법연수원장), 송재현(서울고법원장), 조용완(서울고법원장), 김대환(서울고법원장), 이웅웅(서울고법원장), 신정치(서울고법원장), 김동건(서울고법원장), 강완구(서울고법원장)
국가인권위원 지명	김오섭(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법학교수), 조미경(법학교수), 나천수(변호사,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인섭(법학교수), 최금숙(법학교수)
부패방지위원 추천	강금실(변호사), 김오수(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세모(변호사,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수정(변호사), 소순무(변호사,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덕홍(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공적자금관리위원 추천	김승진(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조용완(서울고법원장), 김대환(변호사, 전 서울고법원장)

괄호안은 각 재판관 또는 위원 지명(추천) 당시 직업 또는 주요 직책

2.2. 사법부 수장이자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사법부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 회의 의장직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장직을 맡음.

가. 사법부 조직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 및 법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인사이동을 포함한 보직부여, 징계, 근무평정 등을 수행함
-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함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함
-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을 지휘함

나.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며 투표시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결정권을 가짐
-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음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권한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비롯하여 2005년 현재 정원 2,074명의 법관과 정원 300명의 예비판사에 대한 임명과 보직부여, 징계,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대법원장은 정원2000명의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음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비 고
대법관	대법관 13명(총13명) 제청권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대법관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권한	법원조직법 제68조	
판사 임명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임명하는 권한	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판사 근무성적 평정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관리 반영권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예비판사 임용	예비판사를 임용할 권한	법원조직법 제42조의2	
판사 보직부여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부여할 권한	법원조직법 제44조	
판사 직무대리	판사로 하여금 다른 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6조	
판사의 겸임	법관을 사건 심판외 다른 직무를 맡기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52조	
사법연수원장 등 임명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 교수 임명권	법원조직법 제74조	교수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연수원장 제청 후 임명
사법연수원생 임명	사법시험 합격자중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권	법원조직법 제72조	
법관 징계처분 집행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권	법관징계법 제26조	
법관 징계청구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징계를 청구할 권한	법관징계법 제7조	대법원장 외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도 징계청구권 있음
판사의 퇴직 및 휴직	심신장애로 인한 법관퇴직 명령권 및 법률연수, 질병요양으로 인한 휴직청원시 휴직허가권	법원조직법 제47조, 제51조	

● 법원공무원 임명, 승진, 평가, 징계에 대한 권한

대법원장은 10,000여명에 이르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하여 승진, 근무성적평정, 징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권한을 가지고 있음.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법원공무원임명	법원공무원 임명권	법원조직법 제53조
법원공무원승진	일반직 6급이상 법원공무원 승진심사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과 위원 지명권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
근무성적 평정	법원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심의조정하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2조3항
고등징계위원회	예비판사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	법원공무원규칙 제94조2항

〈참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 대상자 세부내역

출처 : '사법연감 2004(2003년 연말기준)

구 분	인사대상자 수(정원)	구 분	인사대상자 수(정원)
대법관	13	사법연수원 교수	61
대법원 재판연구관	63	비서실장(차관급)	1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	6	사법연수원생	2000
지방법원장(가정·행정법원장)	15	법원관리관(1급)	1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101	법원이사관(2급)	14
고등법원(특허법원) 판사	190	법원부이사관급(3급)	28
지방법원(가정·행정법원) 부장판사	283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
지원장	45	법원부이사관(3급)또는 법원서기관(4급)	19
지방법원(가정·행정법원) 판사	1171	별정직 비서관(2급상당)	1
예비판사	300	별정직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법원행정처장	1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887
사법연수원장	1	기능직 공무원	2716
사법연수원부원장	1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82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권한**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법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비 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대법관제청자문위원(당연직 위원 제외) 4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 및 위원장 지명권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	대법관제청대상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자문하기 위한 기구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법관임용심사위원(당연직 위원 제외) 5~7명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권한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관한예규 제3항	법관 및 예비판사 신규임용을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관임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 임명권(총7~9명)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법관인사 기본계획수립과 인사운영을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 위촉권한(총10~20명)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장과 6명의 위원, 4명의 예비위원 및 위원회 간사 임명권	법관징계법 제5조	법관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기구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장과 위원 임명권(법원행정처장의 제청)	국가공무원법 제10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불복소청 심사기구

● **재판 및 업무관련 권한**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단독재판 허가	단독재판 불가능한 재직기간 7년미만 판사에게 단독재판 허가할 수 있는 권한	법원조직법 제42조의3
파견근무	타 국가기관 법관파견 허가권	법원조직법 제50조
재판연구관 업무	대법원 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명령권	법원조직법 제24조

● **사법부내 기타 위원회 구성권**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비 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 위촉 및 임명권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2조	
법관윤리강령위원회	법관윤리강령위원장 위촉권		대법관중에서 위촉함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	법원조직법 제74조의5	
판례심사위원회	판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권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판례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 결정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장과 6명의 위원, 4명의 예비위원 및 위원회 간사 임명권	법관징계법 제5조	법관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 위촉권	법원조직법 제25조	대법원장 자문기관

● **기타**

구 분	대법원장의 권한	권한의 법적 근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위원 1명(총9명) 추천권	검찰청법 제39조

Ⅱ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1999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약 6년동안 대법관들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실질적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들을 되돌아보며, 국민들이 대법원에 걸었던 기대와는 반대편에 섰던 판결들을 찾아보았다.

사법감시센터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비판하기로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표적 사례 7가지를 소개한다. 이들 판결례들은 대법원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왜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 작금의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들이다.

■ 특히 이 판결들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하급심 법관들이 보여준 뛰어난 판결을 대법관들이 별다른 논증이나 설득력있는 논리 제시없이 뒤집어 버린 점이다. 3심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하급심 법관들의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뛰어난 논리제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대법원 판결은 ‘후배 법관에게도 부끄러운 판결’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었다.

■ 참여연대가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로 선정한 7개의 판결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할 것이다. 이 판결들 외에도 대법원의 존재의의에 걸맞지 않은 판결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가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병역법위반죄를 적용한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04도2965 병역법 위반 사건’ 판결이나, 실질적인 영업양도관계인만큼 고용관계를 계승해야 함에도 고용관계 계승의무를 인정치 않은 이른바 ‘삼미특수강 사건’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2680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도 그 판결들중의 일부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 제25호에 소개한 7개의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대법원 개혁 논의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7가지 판결(선고일자 순)

판결 요지 또는 의미	재판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선고일	비 고
노동자들에게는 더 없이 가혹한 대법원 - 투표절차 밟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체행동은 불법이며 형벌의 업무방해죄 적용대상이라고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영(재판장),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이하 반대의견) 손지열(주심), 박재윤, 송진훈	99도4837 업무방해(형사)	2001. 10. 25	2심 - 무죄 대법원 - 유죄
서울시장 판공비 지출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공개할 필요없다고 하여 공익적 차원의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	대법원 제3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2001두461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행정)	2003. 3. 14	1심 2심 - 정보비공개결정 부당 대법원 - 정보비공개결정 정당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청소년 선도를 위해 게시를 금지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	대법원 제1부, 이용우(재판장), 박재윤(주심), 서성, 배기원	2002두10520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소송(행정)	2003. 5. 23	2심 - 현수막게시 금지조치 부당 대법원 - 현수막게시 금지조치 정당
보안관찰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될 국가비밀이므로 정보공개 제한대상이라고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영(재판장), 배기원(주심), 조무제, 변재승, 이용우,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이하 반대의견) 유지담, 윤재식, 김용담	2001두8254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행정)	2004. 3. 18	1심 2심 - 정보비공개결정 부당 대법원 - 정보비공개결정 정당
소송제기시한 이후에 추가한 전환사채 발행무효사유는 재판검토대상이 아니라 하여 삼성그룹 이재용씨를 보호한 판결	대법원 제3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주심), 변재승, 강신욱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사건(민사)	2004. 6. 25	2심 - 소송제출시한과 소송사유추가는 별개 대법원 - 소송제출시한 넘어 추가된 소송사유는 무의미
국회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의 외피를 쓴 대법관들의 정치적선언	대법원 제1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2004도3212 국가보안법 위반 등(형사)	2004. 8. 30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홈페이지에 후보자 비판글 쓰는 것 조차 금지하여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	대법원 제1부, 이용우(재판장), 김영란(주심), 윤재식, 이규홍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형사)	2005. 1. 27	1심, 2심 -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 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원 판결 7가지, 왜 문제인가



노동자들에게는 더 없이 가혹한 대법원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업무방해(형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영(재판장),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이하 3명은 반대 의견) 손지열(주심), 박재윤, 송진훈

■ 재판경과 -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2심(대전지법) : 무죄

3심(대법원) : 유죄

이 사건 판결은 노동조합이 내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였을 경우 그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라는 점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의한 책임여부와 별개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조합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다.

2001년 10월 이 사건을 판결한 대법관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경우에 초차 노동관계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2000년 5월 26일 선고, 99도 4836 판결)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제도의 취지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담보' 하려는데 있는만큼, 찬반투표라는 형식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민주적 의사수렴 정도나 조합원들의 참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통해 쟁의행위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조합원 총회를 거친 파업행위였고 조합원 총회 이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만큼,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노동조합 내부 의사형성 과정의 결함만으로 쟁의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찬반투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을 적용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대법관들이 앞서말한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면서 내부 의사수렴 과정의 하자만을 문제삼아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형식적인 법률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을 간단히 눈감아 버린 것이다.

이 사건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중 3명은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관한 이러한 견해(다수의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징계책임을 묻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 있

어서의 정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로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견해이지만, 정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법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라하

며 업무방해죄 적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10명의 대법관들의 판단과 대조된다.



판공비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판결

2003.3.14 2001두4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 대법원 제3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재판경과 -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1심(서울행정법원), 2심(서울고법) : 정보비공개결정 부당
3심(대법원) : 정보비공개결정 정당(파기환송)

2003년 3월 14일에 대법원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보다 정보공개 범위를 훨씬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판공비를 사용한 간담회, 연찬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판공비에서 격려금이나 선물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였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상대방(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판공비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하고, 공적인 예산을 사용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공금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는 “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은 당해 공무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수령자가 누구인가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을 것”이고 “미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을 현저히 훼손할 것”이므로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공개하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비공개 ‘해야 하며’ 판공비로 선물이나 사례,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금품을 수령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하는 관점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은 전부 비공개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금품수령의 경우에는 전부 비공개, 행사참석의 경우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판공비 사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공비는 그동안 사용의 불투명성, 불명확한 집행기준, 사적인 유용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어 온 예산항목이다. 그리고 주로 간담회, 연찬회 등에서의 식대, 술값, 자치단체장의 선물구입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적

인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공비 지출 관련정보의 핵심인 행사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이름을 대부분 비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판공비 사용에 대한 감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를 지지했던 고등법원까지의 선고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법해석과 시대인식이 일반인의 법상식, 더 나아가 원심판결을 선고했던 법관들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과 우려를 갖게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현수막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옥외광고물?

2003.5.23 선고 사건번호 2002두10520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소송(행정) 대법원1부 이응우(재판장), 박재운(주심), 서성, 배기운

■ 재판경과 -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 1심(춘천지법) : 현수막게시 금지조치 정당
- 2심(서울고법) : 현수막게시 금지조치 부당
- 3심(대법원) : 현수막게시 금지조치 정당(파기환송)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춘천시장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를 허가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사건의 이름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없어 보이지만, 하급심(서울고법) 판사들의 판결까지 뒤집어가면서까지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관들의 모습은 후배 법관에게도 부끄러울 정도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률의 제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원고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극히 미진한 판결이며,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퇴행적인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반하느냐는 점이 주된 쟁점이 아니라 원고가 설치하고자 한 광고물의 내용을 실

정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한하고 있느냐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으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합헌성을 강조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의의 또한 적지 않은 것이므로, 이 법이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위와 같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게재된 현수막을, 청소년으로부터 성인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게시하고자하는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3,4호(청소년 선도에 저해, 기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현수막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소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이 그 표현 자체로서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라고 하거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물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판단의 재량을 부여할 경우에는 자칫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나 그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제한법률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점을 지적하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광고물의 내용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의 내용과 표현 방법 및 수단을 종합하여 볼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 3,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라고 하여 앞 부분의 장황한 문장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전혀 없는 '종합하여 볼 때'라는 한마디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존에도 대법원 판결이 구체적인 논증을 생략한 채 단순히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인 것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법리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판결의 논리성·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헌법 제37조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법률유보원리이다. 즉 기본권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무수한 제한과 금지의 목록들 가운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유라면 그것은 허용되는 행위인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서 제한의 필요를 느낄 수도 있지만,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이 헌법 제37조2항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만 강변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명백한 논증의무의 회피이며 마치 박정희 시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는 듯하다.



'청와대 가는 길 약도' 도 국가기밀로 비공개정보라 할 판결

2004.3.18 선고 사건번호 2001두8254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행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영(재판장), 배기원(주심), 조무제, 변재승, 이용우,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이하 3명은 반대의견) 유지담, 윤재식, 김용담

- 재판결과 -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1심(서울행정법원), 2심(서울고법) : 정보비공개결정 부당
3심(대법원) : 정보비공개결정 정당(파기환송)

대법원은 2004년 3월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제3호(공공의 안전 등)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에서,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을 모

두 뒤집으면서 법무부의 비공개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안관찰제도의 반인권적 문제가 아니라보안관찰 통계자료가 세상의 햇빛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대법관들이 본 이유이다.

"보안관찰관련 정보는 ... (중략) ...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위 정보가 북한정

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하략)

즉 보안관찰자 관련 통계는 북한의 정보기관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세상의 햇빛을 보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에게 김포공항에 있는 화장실 수를 북한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북한이 김포공항을 테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므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할까? 김포공항 화장실 수가 공공정보가 아니라면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숫자와 그 위치를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한다면, 이 또한 북한의 강경군부세력이 국가교통기간망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인만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겠지만 대법관들의 판결요지는 ‘황당하다’. 거의 알레르기 수준의 냉전 논리가 섬뜩하다. 남북대결구도는 요지부동의 현실로 남아 있고, 보안관찰 대상자는 소위 대남공작활동의 좋은 먹이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보양보하여 1970~80년대 군사

독재가 엄혹했을 때 대법원이 독재자들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이것은 남북정상들이 만난 2000년에서도 4년이 지난 2004년 3월에 내려진 판결이니 대법관들의 시대정신이 얼마나 뒤쳐진 것인지 황당하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그나마 3인이 내놓은 소수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된다. 소수의견은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중요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분명 다수의견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

소수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이 사건 정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될 우려가 없고 실사 악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사법통계를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될수록 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수의견과 같은 경직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야기와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을 가버이 여겨서는 안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흑시나 바뀌었던 것은 아닌지 대법관들에게 되물을 만한 일이다.



논리비약으로 삼성 재벌의 불법행위 보호해준 판결

2004.6.25 선고 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사건(민사)
대법원 제3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주심), 변재승, 강신욱

■ 재판경과 - 하급심에서는 인정치 않은 논리를
인정한 판결

2심(서울고법) : 주식발행무효소송 제출시한과
무효사유 추가시한은 별개

3심(대법원) : 주식발행무효소송 제출시한과 무효사유
추가시한은 동일

이 사건은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가 발행하여 삼성 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인수한 삼성전자 전환사채의 발행의 무효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이다. 물론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이미 발행된 주식(사채)을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할 거래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발행무효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사들이 인정치 않은 더 놀라운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대법원이 경제문제, 특히 재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무척이나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제시한 주요 논리중 하나는, 원고측이 소송진행중에 추가한 발행무효소송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발행무효소송은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제기토록 되어 있는 상법 조문을 확장해석하여, 소송제기뿐만 아니라 발행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도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만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서 마치 이사회를 열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원고측이 주식이 발행된 지 6개월뒤에 주장했다며 재판의 검토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였다.

즉 대법관들은 “원고는 1997.3.24.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같은 해 6.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998.4.16.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흠이 있다는 주장을 새로 추가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처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중략)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측은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사정족수는 30명인데, 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32명의 이사 중 4명은 당시 해외체류 중이었으므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1심 소송 제기시점인 97년 6월 24일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측도 1심 소송 진행 중 전환사채발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장기간에 걸친 이사회 개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이후에야 그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고 항소심에서부터는 1심에서 기각된 다른 무효사유들에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는 무효사유 주장이 제기된 시점을 소송제기 기한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원고측의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였다.

하지만 신주발행무효소송과 같은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 내지 판결을 통한 법률관계의 형성의 요구”이며, 개개의 형성원인의 주장은 공격방법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신주발행의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지, 공격방법에 불과한 개개의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제척기간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증거의 수집 및 입증 과정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원고측이 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후 불가피한 이유로 무효사유를 추가한 경우 그와 같이 추가된 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발행회사측으로 하여금 발행 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증거의 수집 및 입증 과정의 불평등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적 진실과 경제정의 실현과 괴리된 형식적인 법률해석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경영지배권 3세 승계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재벌의 힘에 편승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판결의 외피를 쓴 대법원의 정치적 선언

2004.8.30 선고 2004도3212 국가보안법 위반 등(형사)
대법원 제1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2004년 8월 3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일부 개정이나 아니면 유지냐를 두고 첨예하게 논란이 있던 2004년 당시였고, 또 대법원의 이 사건 재판이 선고되기 나흘 전인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찬양, 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다.

이 재판의 핵심이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위반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제7조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이상 위헌법률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정작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법관들이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강력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대법관들이 선고한 판결내용을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 또는 유무죄의 확인여부를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관들은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이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

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결정을 공개하면서 입법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가고 있는 입법사항에 대해 개입한 정치적 행보에 다름아니었다.

또 과거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해오는 동안, 그리고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동안, 사법부는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실는 등 인권옹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이에 대한 자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 존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법관들은 국가보안법만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바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소수의견 1명 없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결정과 함께 이 대법원 판결은 최고 법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수일색의 인사로 구성되는 등 이념적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대법원이 사회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정치적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는 폐쇄적인 집단임을 보여준다.



인터넷시대를 외면하고 정치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퇴행적 판결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형사 대법원 제1부 이용우(재판장), 김영란(주심), 윤재식, 이규홍

■ 재판경과 -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1심(서울북부지법), 2심(서울고법) - 선거법 위반 무죄 3심(대법원) - 선거법 위반 유죄(파기환송)

피고인 김모씨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확실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개인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위반이라고 형사기소되었다.

피고인 김모씨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005년 1월 대법원 제1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맡았던 하급심 판사들은, 선거법 93조가 선거가 혼탁해지거나 금권선거가 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선거법에서 정한 방식외에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위한 글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지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나올 정치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조차 유권자인 국민이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

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하급심 판사들은 만약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쓴 비판 글을 처벌한다면, 후보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지, 찬성의 글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 공소권을 가진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의 4명의 대법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에서 정한 방식이외에는 비판 및 지지의 글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법률문구에 집착하여 유죄라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최소한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 비판의 의견제시와 토론의 기회조차 봉쇄하겠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사회질서 유지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고자 하는 하급심 판사들의 뛰어난 판결에 비하여 너무나도 뒤쳐진 판결이다.

더 뛰어난 법적 논리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대법관들이 하급심 판사들의 전향적인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넘어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Review 사법감시센터

■ 법조 모니터

- 2005.4.27 / 5.24 [수사 모니터]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감싸주기 의혹 관련, 2003년 ~2004년 인천지검 수사책임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요청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
- 2005.5.29 [법조인 모니터] 늘어나고 있는 판검사의 기업진출, 법경유착 우려돼
 - 퇴직 판,검사의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 취업사례 및 사외이사 영입현황 발표, 제도개선 및 법조인의 윤리적 노력과 사회적 감시 필요
- 2005.5.26 /5.31 [법조인 모니터] 임대소득세 탈루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26 사퇴촉구 논평에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결정적 결함이 드러난 이 재판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2005.6.21 [판결모니터]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표 및 “제2회 시민포럼 - 법정밖에서 본 판결” 진행
 -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 고법 판결(2004노315, 2005.4.20 선고)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을 연 대법원 판결(2002다60467, 2004.12.10 선고)에 대한 판결비평문 발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을 소재로 한 공개좌담회 개최
- 2005.7.4 [법조인 모니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 2005.7.6 [법조인 모니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 2005.7.5 [논평]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 제도개혁

- 2005.5.6 [논평] 검사들의 사법개혁 방안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검사들의 목표는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인가,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인가?
- 2005.5.13 [논평] 로스쿨 도입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설립안
 - 로스쿨을 법조직역의 통제하에 두려는 세부계획에 대해 비판
- 2005.6.20 [의견서] 10년 넘게 반복된 변호사 불공정계약조항은 변협과 법무부의 ‘직무유기’ 때문
 - 지나친 성공강주, 자료임의 폐기 등은 1995년 소비자보호원 지적이래 수 차례 시정권고 받은 것,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불공정계약 체결의 고질적 반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촉구서 제출
- 2005.6.24 [의견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참여연대 입장제출
 -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 검찰조서 증거능력배제 등에 동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역시 조서에 준해서 취급해야, 개정안 316조의2 모순진술규정은 조서재판 폐해극복에 역행
- 2005.7.7 [논평]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5월에는 검찰반발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반발 때문에 개혁실종이라 비판

참여연대와 싹 틔우는 희망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패추방 및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핸드폰 요금인하 및 시민권리찾기운동,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금부과 촉구 등 조세개혁운동,
썩고 낡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두 번의 낙선운동,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

벌써 10년입니다.

“아직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실 더 많은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mail : mc@pspd.org

www.peoplepower21.org



희망을 준 당신입니다 꿈이 되어준 당신입니다

군사독재의 서슬에 눈과 귀가 막혔던 시절,
이 땅에 진정한 언론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한겨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은 한겨레,
이제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신문,
인터넷 이상의 미디어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겨레의 꿈이 되어주십시오.
한겨레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2 창간을 선언한 한겨레가 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한겨레 발전기금 납부 방법

1. 은행 계좌이체

- 국민은행(계좌번호 827901-04-010483 예금주 한겨레신문사)
- 하나은행(계좌번호 555-910007-69505 예금주 한겨레신문사)

2. 인터넷(jujuhani.co.kr)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본·지점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 반드시 본사 주주센터 (02)710-0128로 연락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구독권 또는 주식 교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겨레신문이 발행하는 매체의 구독권
또는 한겨레신문의 주식(액면가 기준)으로 교환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겨레 제2창간 위원 일동

사법감시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과 더불어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영역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발족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일관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사법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일구어왔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의 무풍지대였던 법조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 대상이 되고있는 법조인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사법감시**를
95년 10월부터 발행해왔습니다.



사법감시는 현재 전국의 판사와 검사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사법감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회원(후원부서 : 사법감시센터)으로 가입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513-088742-13-101 (예금주 : 참여연대사법감시)
회원가입 : 전화 02-723-0666(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송비 절감 등을 위해 변호사와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분들께도
사법감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자우편 발송신청 jwc@pspd.org

2005
新刊

國內 第一의 民法 KOMMENTAR!!



編輯代表 : 郭潤直 編輯委員 : 孫智烈 · 金滉植 · 梁彰洙



民法注解 (XVII) · (XVIII) · (XIX)

民法 전체를 條文順序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서술하며
각 條文마다 중요한 判決들을
引用해 判例理論을 밝힌 코멘
타르이다.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民法注解(XVII)(채권 10) 734조~749조
民法注解(XVIII)(채권 11) 750조~757조
民法注解(XIX)(채권 12) 758조~766조